



: 2018-12-27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238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지방세 166,82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



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시 ■■■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26. D로부터 ① ■■■시 ■■■구 E(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B 대지 8,617㎡, ② B 지상 건물 5,818,01㎡, ③ F 하천 2,400㎡, ④ G 하천 17,182㎡, ⑤ H 하천 660㎡를 출연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① 내지 ⑤의 토지 및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과세물건	과세표준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산출세액	감면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① B(대지)	1,120,210,000	389,260,810	389,260,810	0	77,852,160	77,852,160
② B(건물)	6,481,290,300					
③ F(하천)	240,000,000					
④ G(하천)	1,890,020,000					
⑤ H(하천)	72,600,000	2,904,000	2,904,000	0	580,800	580,800
소계	9,804,120,300	392,164,810	392,164,810	0	78,432,960	78,432,960
합계		0				

[표1]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 내역

라. 그 이후에 2016. 1. 11. G 하천 17,182㎡는 G 하천 13,443㎡, I 대지 430㎡, J 하



천 6㎡, K 하천 3,211㎡, L 대지 92㎡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C병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B 대지와 연결한 나머지 F, G, H, I, J, K 각 토지(총 면적 20,150㎡,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야외행사장, 연못과 동물사육장, 화단과 조경지,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공원 및 생태숲(이하 '공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각 토지 중 I, L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3층 다가구주택(대지면적 876㎡, 연면적 649.68㎡)을 신축하여 직원생활관(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지방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아래의 [표 2]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140,641,680원, 지방교육세 12,302,060원, 농어촌특별세 6,151,030원 합계 159,094,770원(가산세 포함)과 [표 3]과 같이 2013년 재산세 3,065,850원과 교육세 611,370원 및 2014년 재산세 3,388,000원과 교육세 677,600원 합계 7,733,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과세 물건	과세표준(원)	취득세(원, 세율 4%)			지방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본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 실가산세	본세	납부불성 실가산세	본세	납부불성 실가산세
F	2,130,020,000	85,200,800	17,040,160	33,765,070	8,520,080	3,376,500	4,260,040	1,688,250
G								
H	72,600,000	2,904,000	580,800	1,150,850	290,400	115,080	145,200	57,540



합계	2,202,620,000	140,641,680	12,302,060	6,151,030
----	---------------	-------------	------------	-----------

[표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내역

□ 2013년 재산세 부과 내역(재산세, 교육세 합계 3,668,220원)

과세물건 (분할전 지번)	과세표준(원)	세율	재산세(원)	교육세(원)	합계(원)
F	661,371,480	종합합산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3,065,850	611,370	3,668,220
G					
H					

□ 2014년 재산세 부과 내역(재산세, 교육세 합계 4,065,600원)

과세물건 (분할전 지번)	과세표준(원)	세율	재산세(원)	교육세(원)	합계(원)
F	713,132,420	종합합산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3,388,000	677,600	4,065,600
G					
H					

[표 3] 2013년, 2014년 각 재산세 부과 내역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병원에 입원한 요양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자원봉사자나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생태숲과 산책로, 야외행사장, 연못, 동물사육장, 화단과 조경지 등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C병원의 입원환자들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I 대지, L 대지를 병원의 의료진과 일반 직원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진과 일반 직원은 병원의 필수불가결한 인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기숙사도 C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2013년, 2014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재 공원과 기숙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2)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나)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에 의하면, ① "의료업"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을 말하고,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 ③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④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⑤ 의료기간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그 [별표 3]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필수적인 시설기준으로 입원실, 응급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이상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한방요법실(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탕전실(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외부 용역 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탁물처리시설(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가발전시설과 그 밖의 시설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3조는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1호), 제6조는 병원의 표준업무를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제1호), 다양한 필요에 의한 환자의 진료(제2호 내지 제8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

(1) C병원은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 ■■■구 M면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C병원이 자동차로 ■■■ 시내에서 약 25분, ■■■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 C병원의 병동 정면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앞으로 바로 연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다. 여기에는 야외행사장용 잔디밭이나 공원과 생태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에는 각종 나무와 꽃이 자라며, 통행로 또는 산책로(이하 '산책로'라고 한다)로 이용되는 길이 포장되어 있다. 산책로 옆으로는 화단과 잔디밭, 연못, 동물사육장 등이 있으며,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는 정자와 나무의자가 있다. 공원의 끝쪽에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고, 기숙사 주변은 주로 소나무와 두충나무를 심은 생태숲과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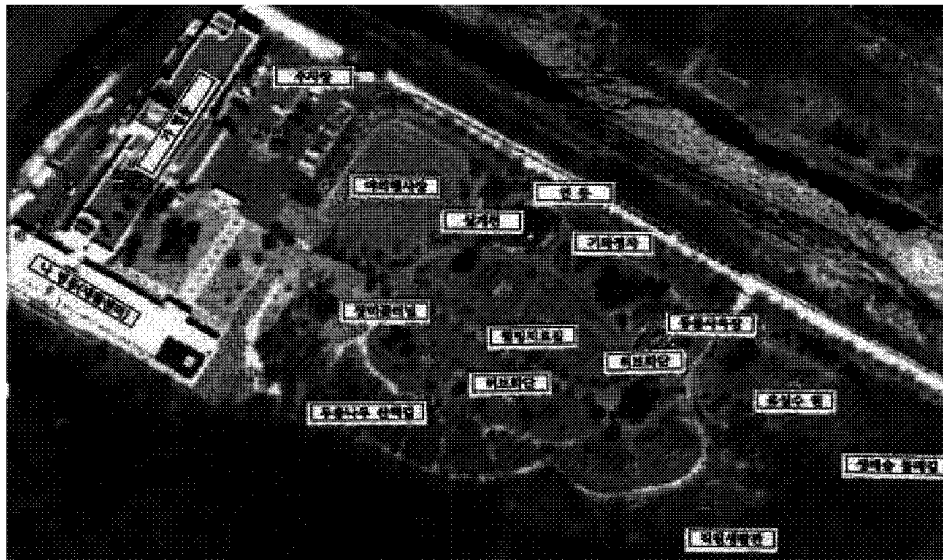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은 아래 [표 4]와 같고, 그 일대의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토지	분할 후 토지	실제 사용현황
③ F(하천)	-	생태숲과 산책로(공원 부지)
④ G(하천)	G 하천 13,443㎡	연못, 실개천, 기와정자, 장미꽃터널, 동물사육장, 산책로 등(공원 부지)
	I 대 430㎡	직원생활관 부지
	J 하천 6㎡	직원생활관 출입로



	K 하천 3,211㎡	유실수 원, 생태숲과 산책로(공원 부지)
	L 대 92㎡	직원생활관 부지
⑤ H(하천)	-	야외행사장

[표 4]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



[도면] 병동, 공원, 기숙사 일대의 형상

(3)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은 환자와 내방객들의 만남 및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간호사가 휠체어를 탄 환자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4)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기숙사 부지 부분은 C병원의 병동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 앞쪽에는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 밖에서부터 기숙사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과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병동, 공원 및 기숙사를 C병원 전체로 보아 그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그 울타리로 병동, 공원, 기숙사 등의 시설과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병동과 공원 사이에도 또 다른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람들이 병동에서 공원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울타리에는 별도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병동에서 공원 및 기숙사로 향하는 출입문 앞쪽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나) 기숙사의 사용현황

(1) 기숙사는 1층에 의사용 1인실 4개, 2층에 남자용 2인 1실 6개, 3층에 여자용 2인 1실 6개가 있고, 총 16개 호실에 최대인원 28명을 수용할 수 있다.

(2) 원고가 만든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는 C병원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고(제1조), 원고는 2인 1실에 입사한 자로부터 1인당 월 10만 원씩을, 1인 1실에 입사한 자로부터 1인당 월 20만 원의 입사비(숙소관리비 및 식비 포함)를 지급받는다(제5조).

(3) 기숙사에 거주한 사람은 2017. 1.경부터 그해 10.경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총 8명이고, 2017. 10.경 현재는 2명이다.

(4)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기숙사 중 203호, 303호, 305호의 출입문 앞면에는 당직실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203호에는 침대 매트리스에 비닐 덮개만 씌어 있을 뿐이고 이불과 베개 등은 없었으며, 303호에는 이불과 베개가 구비되어 있으나 사람이 침대를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5) 기숙사의 입사비 입금내역에 의하면, 203호는 한방의료진의 당직실로, 303호 및 305호는 간호사의 당직실로 각 이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203호에는 2017. 1. 4.부터 의사 N가, 303호에는 2017. 1. 10.부터 간호사 O이, 305호에는



2017. 2. 1.과 그달 6.부터 간호사 P, Q가 각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진 등의 근무 현황

(1) C병원은 입원실 59개, 병상 353개를 보유하고 있고, 의사 10명,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 54명 등 총 168명이 근무하고 있다.

(2) C병원에서는 매일 2명(의사 6명 중 1명, 한의사 3명 중 1명)의 의사와 4명의 간호사가 순번제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3) 의사들은 각자의 진료실에서 간이침대를 두고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별도의 당직실 없이 각 층별마다 복도 중앙에 마련된 안내데스크(desk : 접수처 겸 간이사무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4) 원고의 직원인 R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C병원에 근무하는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은 각자의 진료실과 안내데스크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별도의 당직실이나 거주시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과 '직접 사용'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1조 제1항),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11조 제2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0조 제1호).

(2)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조항에서 '고유업무'와 '의료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제37조).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내지 경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제41조 제7항).

(3) 결국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이 '사용'과 '직접 사용'을 구별하고, 같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고유업무'와 '의료업'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위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인 '의료업'은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포함하는 '고유업무'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접 사용의 범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법문대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업의 의미와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시설기준 등을 기초로 당해 의료법인의 사업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와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이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1)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기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의료법 제36조 제1호와 그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는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



에는 입원실, 응급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등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라고 할만한 의료시설부터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 장례식장 등 부수 시설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반면에 의료법 제49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취득세 감면(제20조)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그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① 침실, 사무실, 영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② 특히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와 형식, 특히 노인복지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요양병원에 대해 위와 같은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화단 등 조경시설의 일반적인 기능과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C병원의 환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에서 산책과 운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한다고 하더



라도, 이는 원고가 의료업에 공원 부분을 간접적·부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 부분이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기숙사 부지 부분이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1. 처분의 경위'와 '2. 다. 3)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의 사업 목적, 기숙사의 취득 목적과 경위, 그 실제의 사용관계와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기숙사는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숙사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행위나 의료업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서 의료행위를 간접적·부수적으로 보조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병원 등 의료기관은 병동이나 의료장비 등의 물적 시설과 의사, 간호사, 일반사무직원 등 인적 구성원의 종합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업이 아닌 어느 업종에서나 그 종업원 등 인적 구성원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인적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숙사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한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구태여 '사용'과 '직접 사용', '고유업무'와 '의료업'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더 나아가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한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의료진 등 인적 구성원이 의료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이유로 그들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까지도 일률적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C병원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그때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인 2016. 9.경에 비로소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C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사 10명,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 54명과 일반사무직원 등을 포함하여 총 168명이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동안 기숙사에 거주한 사람은 총 8명뿐이고, 2017. 10. 경 기준으로는 단 두 명만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C병원은 포항시 북구 M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를 따라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기숙사가 없으면 의료진과 직원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오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숙사는 원고가 의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기숙사 중 203호와 303호, 305호를 의사와 간호사의 야간 및 휴일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당직 의료인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환자나 입원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병원에서 대기하는 의료인을 뜻한다.

② 그런데 기숙사는 C병원의 병동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도 병동의 부속건물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 이격 거리상으로도 당직 의료인이 대기할만한 장소로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더구나 야간이 되면 요양환자가 있는 병동과 공원, 기숙사가 있는 부지를 구분하는 울타리의 출입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기숙사의 입실현황에 의하면, 의사 N, 간호사인 O, P, Q가 203호, 303호, 305호에 각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연 기숙사가 실제로 당직 의료인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특히 203호와 303호에는 비록 침대와 이불 등 침구류가 구비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가구와 필수적인 생활용품의 유무 및 공간의 사용 흔적 등에 비추어 평소에 사람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⑤ 원고의 직원인 R은 C병원을 방문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병원에 근무하는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은 각자의 진료실과 안내데스크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별도의 당직실이나 거주시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무엇보다도 기숙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C병원의 당직 의료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직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당직 근무가 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근무방식이 위급한 요양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호하려는 당직 의료인제도의 운영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기숙사 중 203호, 303호, 305호는 그 명칭이나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C 병원의 의료진이 근무시간 중에 잠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고 보일 뿐 당직 의료인을 위한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C병원이 위 3개의 호실을 실제로 모두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의 호실이 총 16개일 뿐만 아니라 2017. 1.경부터 현재까지의 입실현황에 의하더라도 여기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기숙사는 주된 용도가 직원들의 숙소 또는 근무시간 중 휴식이나 대기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지,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종래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그러나 당시 시행·적용되던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포함된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와 '목적사업' 또는 '의료업'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당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비



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그 범위를 축소·제한하는 취지로 제·개정된 점,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의료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이나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도 포함하고있어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의료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같은 취지로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률요건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리한 선례로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적용 법률이나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가 없다.

(6) 나아가 설령 기속사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의료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23. 비로소 기속사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속사의 부지 및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2018-12-27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박상한

              판사      김응수



별지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외과대



: 2018-12-27

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 목이 있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 료 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 목이 있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 료 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만 갖추 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만 갖추 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만 갖추 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만 갖추 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 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 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 과 진료과 목이 있는 경우에 만 갖추 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 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추 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 에만 갖추 다)	1 (조제실 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춘 다)	1 (조제실 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춘 다)	1 (조제 실 을 두는 경 우 에 만 갖 춘 다)	1 (조제 실 을 두는 경 우 에 만 갖 춘 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p>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p>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p>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사실	자원사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및목욕실	세탁및물장물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 2018-12-27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를 말한다.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